

☎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36 / 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전지숙(6536)/ E-mail: kma-js123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52-14516호

시행일자 2024. 2. 1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알림(대구지방환경청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대구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-387 (2024. 1. 16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대구지방환경청에서 「폐기물관리법」을 위반한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(소각)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, 행정처분(영업정지 10개월)사항을 알려온바,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소재지	위반사항(위반조항)	처분내용(처분조항)
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	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-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 및 법적 처리기한 초과하여 보관 (법 제25조제9항제1·2호)	영업정지 10개월 ('24.2.5.~ '24.12.4.) (법 제27조제2항제8호)

※붙임 : 대구지방환경청 관련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